

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『행복나눔 적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가입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『행복나눔 적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</p> <p>제 1 조 약관의 적용 행복나눔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<u>적립식예금 약관(구 하나은행), 예금거래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</u>을 적용합니다.</p>	<p>『행복나눔 적금』 특약</p> <p>제 1 조 적용범위 행복나눔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<u>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및 『적립식예금 약관』</u>을 적용한다.</p>	구행명삭제 조항명 변경 구행명삭제
<p>제 2 조 예금의 종류 (생 략)</p>	<p>제 2 조 예금의 종류 (좌 등)</p>	
<p>제 3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실명의 개인 및 법인</u>으로 합니다.</p>	<p>제 3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실명의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 또는 법인</u>으로 합니다.</p>	개인사업자 문구 추가
<p>제 4 조 ~ 제 8 조 (생략)</p>	<p>제 4 조 ~ 제 8 조 (좌등)</p>	